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등 >

■ 유의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068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영화 관람객 등 대상 증표 제시 요구 등 근거 신설	3
2.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유의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3. 12. 26.

다. 회 부 일: 2023.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

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및 제95조).

Ⅲ. 검토의견

1. 영화 관람객 등 대상 증표 제시 요구 등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청소년 관람불가나 제한상영가 영화의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등이 관람객 등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근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④ (생략)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이 경우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 ⑩ (생략)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 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u><후단 신설></u> 1. ~ 5. (생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 12.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 사항) ----- ----- ----.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53조제4항----- ----- ----- 8. ~ 1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9조¹⁾제5항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청소년을 입장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3조 제2항²⁾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³⁾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제62조⁴⁾는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청소년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⑩ (생략)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입시간⁵⁾ 외에는 부모 등을 동반하지 않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음.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등이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 등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종사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규정⁶⁾과 정의 규정⁷⁾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

-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6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 6)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고용금지업소 등 개념을 연결하여 해석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사정에 맞게 증표 제시나 관련 사항이 적용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개정안은 영화·비디오물의 등급구분 준수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등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등의 청소년 관람을 통제하기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등 근거를 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로써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주 및 종사자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따라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비디오물의 경우 ‘12세·15세 이상 관람가’를 포함한 전체의 등급구분⁸⁾을 위반하지 않도록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영화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등급에 있어서만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영화의 경우에도 전체의 상영등급을 위반하지 않도록 나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29조제5항 외에 ‘12세·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에 관한 같은 조 제4항에도 증표 제시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나, 증표 제시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의 입법례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③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성인임이 자명한 경우와 같이 반드시 입장을 제한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재량적 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개정안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제62조 후단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나, 위 제62조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함께 규정하기보다는 법률 이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넷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⁹⁾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¹⁰⁾ 이에 맞추어 개정안에 따른 주민등록증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9)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임.

10) 법률 제19841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 2024.12.27.>

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67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72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82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었음.

2.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 ----- ----- ----- ----- --. <u>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중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5조제1항제2호¹¹⁾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¹²⁾를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67조 제2항제2호·제5호¹³⁾에 따르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53조제1항·제2항¹⁴⁾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62조¹⁵⁾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
-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행정처분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하도록 제공한 자,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복합영상물제공업자 및 부모 등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킨 비디오물소극장업자 등은 고의·과실 여부 등을 불문하고¹⁶⁾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 등을 주문한 뒤 오히려 업주에게 영업정지 사항임을 주장하며 협박한 사례¹⁷⁾ 등이 발생하면서, 청소년이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주에게만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 다. 삭제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 16) 다만,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하는 것은 가능함.
- 17) 서울경제, “나이 속인채 술 마신 10대들 ‘영업정지 안당하려면 돈 내놔라’...너클 끼고 가게 사장 협박”, 2023.12.27., 연합뉴스TV, 나이 속이고 노래방서 먹튀...“경찰, 외려 피해자에 ‘뭘 잘못했냐’”, 2024.2.2. 등 기사 참조

이에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등이 위와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업주 및 종사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또한, 「식품위생법」,¹⁸⁾ 「청소년 보호법」,¹⁹⁾ 「담배사업법」²⁰⁾ 등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폭행·협박과 같이 업주에게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18)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9)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에 대해서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면제를 규정하려는 것이나, 현행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12세·15세 관람가’ 영화에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부모 등의 동반 없이 입장시킨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안 제45조제1항 단서에 제2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외에도 ‘12세·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에 관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함께 추가하여 부모 동반 없이 입장시킨 경우도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²¹⁾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72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82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었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71호)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76

21) 참고로, 개정안은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12세·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